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결 정 문

사건번호: KR-1800186

신 청 인: 삼성전자 주식회사(대리인 변리사 김정현)

피신청인: 정지윤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 청 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매탄동)

대리인: 변리사 김정현

서울서초구 강남대로 343 신덕빌딩 11층

피신청인: 정지윤

서울

분쟁 도메인이름은 "samsungar.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가비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삼평동 유스페이스1) B동 4층)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8. 3. 27.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라고 함)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8. 4. 2.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8. 4. 2.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8. 4. 13.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18. 5. 3.임을 통지하였다. 또한 같은 날 등기우편을

통하여 절차개시 통지 및 신청서 등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018. 5. 3.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8. 5. 3. 센터는 보충규칙에 따라 이대의 위원을 행정패널로 선임요청 하였고, 2018. 5. 5. 행정패널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2018. 5. 9. 행정패널을 구성하였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인 'samsungar.com'을 구성하고 있는 'SAMSUNG' 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의 등록 상표권자이다.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을 2016년 1월 30일 등록한 자이다. 분쟁 도메인이름은 사이트 준비중이라는 정도의 정보만을 게시하고 있는데, 웹사이트 구축 등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을 도메인이름으로서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분쟁 도메인이름을 자신에게 이전할 것을 구하고 있다. 곧 첫째,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둘째,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셋째, 피신청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 도메인이름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제 방안으로 신청하고 있다.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이 사건의 분쟁해결신청서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5. 검토 및 판단

(1) 절차진행상의 언어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을 위한 절차규칙(Rules for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절차규칙') 제11조 (a)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등록계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쟁해결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등록계약에서 사용된 언어로 하는데, 다만 패널은 절차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와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은 2016년 1월 (주)가비아를 통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등록계약에서 사용된 언어는 한국어이다. 따라서 본 분쟁해결절차는 한국어로 진행하고 결정문도 한국어로 작성하기로 한다.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A. 상표·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신청인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표장과 분쟁 도메인이름이 동일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 표장 'SAMSUNG'과 분쟁 도메인이름 'samsungar.com'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는 첫째, 최상위 도메인인 '.com'이 추가됨으로써, 그리고 둘째, 이 사건 표장에 'ar'이 추가됨으로써 양자간에 동일 또는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된다.

첫째, 최상위 도메인 '.com'의 추가와 관련하여, 도메인이름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최상위도메인을 반드시 포함할 수밖에 없고, 최상위도메인은 인터넷주소의 일부이지 출처를 표시하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표장에 최상위도메인이 추가되었다고 하여 표장과 최상위도메인이 부가된 도메인이름 간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변경시키는 성격을 가지지 않고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비교에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표장과 분쟁 도메인이름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분쟁 도메인이름에서 최상위 도메인을 제외한 'samsungar'와 이 사건 표장 간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둘째, '.com'과 같은 최상위도메인이 부가되는 것이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판단할 쟁점은 'samsungar'와 이 사건 표장 간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분쟁 도메인이름은 이 사건 표장 'SAMSUNG'에 'AR'을 추가한 'samsungar'이므로, 이 사건 표장인 SAMSUNG과 분쟁 도메인이름인 samsungar은 동일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samsungar'에 있어서 요부는 'samsung'이고 분쟁 도메인이름에 있어서 가장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며, 전체 분쟁 도메인이름에서 samsung이 먼저 나온 뒤 'ar'이 부가된 것이고, 따라서 전체적인 인상은 분쟁 도메인이름이 SAMSUNG 표장의 소유자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상표에 식별력이 없는 일반명칭이나 기술적 표장을 부가하더라도 혼동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 표장에 추가된 단어인 'AR'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거나,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을 나타내는 일반명칭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패널은 이 사건 표장인 SAMSUNG과 이 사건 표장에 'ar'을 부가한 분쟁 도메인 samsungar은 동일하거나 서로 혼동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한다.

신청인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 사건 표장 'SAMSUNG'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고, 신청인의 표장과 분쟁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패널은 신청인이 '규정' 제4조 (a) (i)항의 요건을 증명한 것으로 판단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규정'에 따른 구제수단을 부여받기 위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에서 신청인은, 자신이 표장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신청인이 인지하고 있는 한 피신청인이 표장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표장을 사용하거나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에 의하여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 분쟁 도메인이름이 피신청인의 사이트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에 불과하며 상품이나 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등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표장들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허여하지 않았고, 분쟁 도메인이름은 현재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고,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선의로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이 자신의 표장에 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응 증명한 경우, 피신청인은 이를 반박하여 자신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이 이러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규정 제4조(a)(ii)항은 충족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일응

증명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반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패널은 신청인이 규정 제4조(a)(ii)항의 요건을 증명한 것으로 판단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는 등 분쟁 도메인이름을 수동적으로 보유 내지 사용하고 있다. 분쟁 도메인이름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피신청인의 악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악의를 판단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이 등록된 시점인 2016년 1월 30일 저명한 이 사건 표장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 피신청인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일반 명칭이라고 할 수 있는 'ar'을 부가하여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는 것,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표장이 포함되어 있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용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 신청인의 표장과 분쟁 도메인이름이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등록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것,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웹사이트 등을 운영한다면 일반 수요자들이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일정한 후원 또는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다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패널은 신청인이 규정 제4조(a)(iii)항의 요건을 증명한 것으로 판단한다.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a)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인 <samsungar.com>을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1인 행정패널

이대희

결정일: 2018년 6월 7일